제78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항만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	1.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우선입주 대상 국내복귀기업 요건(신설)ㅇ 1종 항만배후단지 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 범위 규정ㅇ 국내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마련	1.비중요
2	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	1.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(신설) ㅇ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0조(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)의 요건과 「산업표준화법」 시행규칙 제4조(인증기관의 지정기준), 제5조(인증기관의 지정절차)의 요건을 반영하여 조직, 인력, 시설 및 보충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. - 조직 : 전담조직을 포함한 조직구조와 업무분장, 법인체 입증문서 구비, 인증업무 불공정 수행 및 기타 요인의 영향 받을 우려가 없을 것, 인증활동 중 입수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- 인력 :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확보, 인증심사원의 자격,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체교육 세부내용 - 시설 :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장비 확보, 검사장 및 검사장비 운영 시 공인시험연구기관 관련 규정 준수 - 인증업무규정 : 인증범위, 인증 절차 및 방법, 자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사후관리 방법, 인증수수료 금액 및 납부 등 방법,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관리, 인증심사원 교육, 품질보증 관리지침 및 매뉴얼, 인증업무 관련 불만 및 분쟁 처리절차, 인증업무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인증체계,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인증서비스 보장, 기밀성 유지, 인증관련 기록유지 체계, 업무처리 규정 및 보고계획, 인증관련 정보제공 및 공개, 계측 및 분석 위탁관련 세부기준 및 책임 등 - 보충 요구사항 :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SO/IEC 17065(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)의 기준을 보충적 적용	
3	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혼획·좌초·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기준(신설) 고래류 위판 대상을 어획물인 '혼획된 고래류'에 한정하고, 좌초·표류된 고래류는 폐기 또는 연구용·교육용으로 활용	1.비중요
4	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0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(강화) 0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1. 기존 저축성공제에 한해 적용했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관련 신고기준에 보장성공제를 추가한 내용을 신설 2. 갱신·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%수준으로 설정토록 내용 신설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0 공제상품의 공시(강화) 0 공제상품의 공시 1. 공제사 및 공제모집인의 공제금 부지급률, 소송비율 및 불완전판매비율 등 공제계약자 보호내용을 공시사항에 추가	
5	원자력안전법 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 제도 도입(신설)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하여 '운영허가' 규정을 신설하여, 운영허가 규정에 맞게 허가 제출서류를 새롭게 규정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. 2.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 제도 도입(강화)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타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'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' 체계로 개편 건설허가 제도 도입에 따라 허가 제출서류 개편	1.비중요 2.비중요
6	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산림청)	1.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(신설)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1. 도시숲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(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운영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) 2.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할 것 3. 업무 규정을 작성·제출할 것 -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운영, 관리·이용프로그램의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개발・보급,관리・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, 도시녹화운동 추진 및 민간협력,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,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, 도시숲지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・운영, 도시숲등의 실태조사・통계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・운영 2.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의 기준(신설)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.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보고・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・방행・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.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,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.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(신설) o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-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 o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지정요건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.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보고·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·방행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.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,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	
7	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(강화)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1개월로 단축	1.비중요
8	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(문화재청)	1.정비구역 지정 제안서(신설) ㅇ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의 제안서 제출 ㅇ 첨부서류로 정비구역의 위치·범위 및 면적,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제출 2.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(신설) ㅇ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서식에 관한 사항 3.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(신설) ㅇ 사업(공사)추진상황 신고서의 제출 ㅇ 첨부서류로서 증명서류, 관련 도서, 설계도서, 시행계획 등의 서류 제출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(신설) ㅇ 사업시행자 지정받으려는 자의 지정신청서 제출 ㅇ 첨부서류로 업종별 면허증·허가증, 현황 서류, 사업시행계획서 제출	
9	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(문화재청)	1.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(신설) ㅇ 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-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ㅇ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한 -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, 토지분할 ㅇ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신고절차 -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ㅇ 정비구역에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 - 기본계획, 시행계획, 실시계획에 적합 등	1.비중요